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15

발의연월일: 2021. 6. 30.

발 의 자:이수진(비) · 송재호 · 강민정

송옥주・이규민・윤미향

윤준병 • 민형배 • 김승남

노웅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면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하였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 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 적이고 적극적인 법·제도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 및 혜

택을 사회·경제·지역·세대 간 불평등이 없도록 공정하게 나누고, 취약한 지역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이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 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 등을 원칙으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산업·노동·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경제·사회모델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